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객의 금지행위 신설 및 과태료 부과〉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10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객의 금지행위 신설 및 과태료 부과	2
2. 부칙	8
IV . 입법의 재정영향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Ⅲ. 검토의견

1. 여객의 금지행위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여객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는 것임(안 제21조의 3 및 제5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흡연하는 행위</u>
<u><신설></u>	5. <u>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u>
<u><신설></u>	6. <u>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u>

<u>4.</u>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u>제4호</u>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 5. (생 략) ④ (생 략)	<u>7.</u>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u>제7호</u> ----- ----- 1의5.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해운법¹⁾은 「항공보안법」²⁾ 및 「철도안전법」³⁾과 달리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유사한 음란행위는 같은

1)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2)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15조의8 제2호), 16인승 이상의 여객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⁴⁾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주소란·과다노출 등은 「경범죄 처벌법」⁶⁾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외부와의 차단으로 인해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이 어려운 여객선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질서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 일반법에만 의존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운법」상 명백한 금지규정이 없어 승객 간 음주 소동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여객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금지

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5)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여객선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 행위에 동등한 수준의 제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선박은 밀폐된 해상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위반을 넘어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흡연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항공보안법」 7), 「철도안전법」 8)은 모두 술을 마시거

7)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흡연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은 법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 해양수산부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이 승객의 금지 행위 및 위반 시 처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여객선 안에서 흡연 등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8)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4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9)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¹⁰⁾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음.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¹⁾

문 의 처
02)6788-5427

11)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